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261
----------	-------

발의연월일 : 2024. 1. 11.

발 의 자 : 김희곤 · 태영호 · 백종헌
김용판 · 하영제 · 박정하
최춘식 · 이명수 · 정운천
지성호 · 박성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관한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함)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입찰담합에 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상향입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낙찰자와 결탁하여 입찰 또는 경매에 고의로 탈락하거나 응찰(應札)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입찰가를 조작하는 등 입찰 경쟁을

방해한 사업자(이하 “들러리 사업자”라 함)에 대해서도 낙찰자와 동일하게 계약금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수개의 입찰에 참가할 입찰부문을 나누는 방식으로 입찰담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 사업자들이 낙찰받은 계약금 또는 수주물량의 비율과 각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의 비율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게 됨. 이와 관련하여 들러리 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을 방해하여 얻게 되는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징금이 산정되고 부과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법률에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자가 입찰 또는 경매에 고의로 탈락하거나 응찰하지 아니하여 입찰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의 내용, 규모, 관련 시장의 특성에 비추어 통상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신설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매출액”을 “매출액(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중 입찰 또는 경매(이하 “입찰등”이라 한다)에 고의로 탈락하였거나 응찰(應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입찰등에 고의로 탈락하거나 응찰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받은 금액 또는 실제 지급된 대가가 없는 경우 해당 입찰등의 내용, 규모, 관련 시장의 특성에 비추어 통상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2. 수개의 입찰등에 관하여 입찰등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각각 참가할 입찰등의 부문, 입찰등의 물량을 나누는 방식으로 상품이나 용

역의 거래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경우 각 사업자별 계약금액

3. 입찰등에 고의적으로 탈락하거나 응찰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낙찰자 또는 경락인이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게 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경우 그 위탁금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3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매출액</u> 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3조(과징금) ① ----- ----- ----- -----매출액(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말한다) ----- ----- ----- ----- -----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중 입찰 또는 경매(이하 “입찰등”이라 한다)에 고의로 탈락하였거나 응찰(應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설>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입찰등에 고의로 탈락하거나 응찰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받은 금액 또는 실제 지급된 대가가 없는 경우 해당 입찰등의 내용, 규모, 관련 시장의 특성에 비추어 통상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2. 수개의 입찰등에 관하여 입찰등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각각 참가할 입찰등의 부문, 입찰등의 물량을 나누는 방식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경우 각 사업자별 계약금액

3. 입찰등에 고의적으로 탈락하거나 응찰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낙찰자 또는 경락인이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게 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경우 그 위탁금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

	<u>지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공정</u> <u>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u> <u>는 금액</u>
--	--